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1071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경남 양산시 B 임야 21,015㎡ 중 394/21015 지분에 관하여, 1) C와 피고 사이에 2021. 7. 9. 체결된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2) 피고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1. 7. 20. 접수 제42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9. 20. 체결한 C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21. 10. 26. D은행에 합계 69,671,3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1987. 1. 19. C와 결혼하였는데 2016. 3.경부터 C의 외도로 불화를 겪다가 2021. 5.경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819호로 이혼 신청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21. 6. 18. “C와 A(이 사건의 피고)는 이혼하고, C가 A에게 양산시 B 임야 21,015㎡ 중 394/210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1. 7. 9. 확정되었다.

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2021. 7. 9.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21. 7.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고, 위 재산분할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가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C와 혼인한지 34년 정도 되고, C는 2016. 3.경부터 외도를 하여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 피고는 2021. 5.경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819호로 이혼 신청을 하였으며, 위 재판과정에서 C가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5,043,200원(공시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